의안번호	제2025-04호
의안제목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개정(안)**
제 의 자	이사장 직무대행 김 홍 근
회의일자	2025. 11. 13(목)
비 고	2025년 제10차 이사회 의결('25.10.30)

1. 의결사항 :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개정(안) 승인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

2. 제의근거 : 정관 제45조

3. 제의취지 : 2025년 제10차 이사회('25. 10. 30.)에서 의결한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고자 함

4. 주요 내용

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준회원의 자격 및 의무 부여

(1) 개정 배경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는 확보**되었으나,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사업자에 대한 회원 자격 부여 필요**

*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및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25.7.29)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등*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회원 의무를 명문화**하여 사업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송·배전망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 포함

(2) 개정 내용

□ 전력거래소 업무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업무 추가** (제5조)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등에 대한 **준회원의 자격 부여** (제9조)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수수료 납부 의무 부여** (제12조)

나. 전력거래소 소관 주무부처 변경

(1) 개정 배경

□ 정부 조직개편(2025.10.01.)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소관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2) 개정 내용

□ 소관 주무부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정관 5조, 6조, 36조, 37조의2, 40조, 58조, 59조의2, 65조, 67조)

- 기관장,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권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
- 정부대표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
-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자와 계약 체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
- 예산안의 승인권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
- 전력거래소 해산 승인권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
- 전력거래소 정관 변경 허가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

붙임: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제20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 한국전력거래소 정관 제20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5조(업무) ① 거래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18. (생략) 19. 거래소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거래소에 위임한 업무 20. (생략) 2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공급을 위한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제5조(업무)** ① 거래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18. (생략) 19. 거래소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거래소에 위임한 업무 20. (생략) 2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공급을 위한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처 변경 ·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한국전력거래소의 역할)에 근거하여,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직접전력거래 관련 업무 추가
제6조(전력시장운영규칙 등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③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수소발전입찰시장운영규칙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전력시장운영규칙 등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③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수소발전입찰시장운영규칙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처 변경
제9조(회원의 자격) ①(생략)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6. (생략) 7. 법 제7조의2에 의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제9조(회원의 자격)** ①(생략) ②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6. (생략) 7. 법 제7조의2에 의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8. (생략) 9. 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발전기만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8. (생략) 9. 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거나,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발전기만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준회원 자격 부여 · 송배전망을 거치지 아니하고 저장판매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에게 준회원 자격 부여
제12조(등록비 등) ① 정회원은 등록비, 연회비 및 전력거래수수료를, 준회원은 등록비 및 연회비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준회원 중 제9조제2항제7호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력거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회원에 대하여는 등록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1.~ 4. (생략) 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③ 전력거래수수료는 전력시장의 전력거래량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량에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⑥ 생략	**제12조(등록비 등)** ① 정회원은 등록비, 연회비 및 전력거래수수료를, 준회원은 등록비 및 연회비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준회원 중 제9조제2항제7호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전력거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회원에 대하여는 등록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1.~ 4. (생략) 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③ 전력거래수수료는 전력시장의 전력거래량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 저장판매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량에 일정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⑥ 생략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동일한 납부 의무 부과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 대한 등록비·연회비 면제 근거 마련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과 동일한 전력거래수수료 기준 적용
제36조(임원의 임면) ①~③ 생략 ④ 공익대표 비상임이사는 전기사업과 직접 관계가	**제36조(임원의 임면)** ①~③ 생략 ④ 공익대표 비상임이사는 전기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처 변경 · 〃
⑤ 정부대표 비상임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정부대표 비상임이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
⑥	⑥	
⑦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는, 거래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전체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중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여 산업통상자원	⑦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는, 거래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전체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중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여 기후에너지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처 변경 · 〃 · 〃

부장관이 임명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전체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후보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⑧~⑪ 생략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전체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후보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⑧~⑪ 생략	· 〃
제37조의2(이사장과의 계약 등) ① 생략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의2(이사장과의 계약 등)** ① 생략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처 변경 · 〃 · 〃 · 〃

⑤ 생략	⑤ 생략	
제40조(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사장을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0조(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사장을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처 변경
제58조(예산 및 회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된 예산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략	**제58조(예산 및 회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편성·제출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경영목표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된 예산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략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처 변경
제59조의2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2**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그 회계연도의 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처 변경
제65조(해산) 거래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해산)** 거래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처 변경
제67조(정관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제67조(정관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처 변경
-	**부 칙 (2025. 00. 0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5. 00. 00.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조 제①항 제19호, 제6조, 제36조, 제37조의2, 제40조, 제58조, 제59조의2, 제65조, 제67조의 개정 정관은 정부조직법 부칙(2025. 10. 1.)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에 시행한다.	-